

# 감정평가서

건명	주식회사 빌드원주택 소유물건(2024타경35198)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법보좌관 손현정
감정서번호	KS240906-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상감정평가사사무소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양보식

(인)

감정평가액	이억오천삼백만원정 (₩253,000,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법보좌관 손현정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매5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빌드원주택 (2024타경35198)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09.13	2024.09.09 ~ 2024.09.10	2024.09.13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아파트	1세대  이	아파트  하	1세대  여	-  백	253,000,000
	합계					₩253,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1. 감정평가의 개요

###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포항남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부동산강제경매(2024타경 35198)를 위한 감정평가임.

### 2. 평가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615-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241번길 42)		
아파트 단지규모	1개동 약 99세대		
건물명칭	빌드원르헤브3차아파트		
건물 구조,지붕,층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사용승인일자	2021.07.14
감정평가 대상 세대			
층	호	건물 면적(㎡)	대지지분(㎡)
11층	1102호	전유부분	41.1803
		66.8358	
		공용부분	
		22.8324	

###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 (1) 기준시점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4.09.13일로 하였음.

####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의 최종 실지조사 기간은 2024.09.09~ 2024.09.10일이고, 토지의 고저, 도로접면, 이용 상황, 주변상황 등,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부대설비, 현상 및 관리상태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하였음.

#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1) 기준가치

본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 II. 감정평가의 방법 및 기타사항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실무 기준」 등 관련 제 법규와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 1. 감정평가방법 관련 규정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1) 제3조 (기준)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1) 제7조 (개별물건기준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방식 중 대상 물건의 가액(구 용어: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방법	내용
공시지가 기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거래사례 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비교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3)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격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시산가격”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격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느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격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4)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 아파트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하되, 대상 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사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1) 구분소유의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지사용권(대지권)이 건물의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건물과 대지 사용권이 일체로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여 건물과 대지지분을 일괄 평가하였음.

(2) 귀원 요청에 의거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배분하되,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제시한 「아파트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를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가액을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에 부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4. 기타사항

본건 아파트의 현장조사시, 폐문 및 관계인 부재로 본건 아파트의 내부구조, 설비, 마감상태 등의 조사가 곤란하여 외부관찰, 탐문조사, 인근 평가전례 등에 의거 동류형 아파트의 일반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며, 건물 구조변경 및 내부하차 유무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III.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

###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본건은 아파트로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음.

### 2.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거래사례[ 출처: 실거래자료 등]

기호	소재지	명칭 동, 호	전유 면적 (㎡)	거래금액	거래금액 /전유면적 (원/㎡)	거래 일자
a	용흥동 615-21	빌드윈르헤브 3차아파트 100*호	66.8358	260,000,000	3,890,131	2024. 01.16
b	용흥동 615-21	빌드윈르헤브 3차아파트 60*호	66.8358	230,000,000	3,441,269	2024. 02.01

※(참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파트 호수의 마지막 숫자는 \*으로 표시했음.

(2) 비교사례의 선정

위 거래사례 중 본건과 동일 단지, 동일 동, 동일 전유면적, 인접 층의 사례로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호(a)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절하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함.

본건 거래 시의 개별적 사정을 제3자인 감정인이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사례는 실거래 신고된 사례로 인근 지역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1.00).

#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4. 시점수정

### (1) 주거용 구분건물의 시점수정 방법

주거용 구분건물 시점수정치는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의 각 직전 달의 주택가격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함. 만일 직전 달의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가장 가까운 달의 주택가격지수를 비교함.

[다만, 거래시점 또는 기준시점이 통계작성 변경(2021년7월) 이전인 경우에는 거래시점 또는 기준시점의 각 직전 달의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되, 거래시점 또는 기준시점이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 이후이고 감정평가시점 당시에 거래시점 또는 기준시점이 속하는 달의 매매가격지수가 조사·발표된 경우에는 거래시점 또는 기준시점이 속하는 달의 지수로 비교함.]

### (2) 매매가격지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지역별,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위치에서 비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음.

기 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비 고
2023년 12월 지수 (거래시점: 2024.01.16)	96.68	
2024년 08월 지수 (기준시점: 2024.09.13)	94.15	

### (3) 시점수정치의 결정

2024년 08월 지수/2023년 12월 지수=94.15/96.68≒0.97383

#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5. 가치형성요인비교

[거래사례 기호(a) : 본건 일련번호(1)]

구 분		격 차 율	비 고
조 건	세 부 항 목		
외부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1.00	사례와 본건은 동일 단지내에 소재하여 외부요인 대등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 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건물 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사례와 본건은 동일 단지, 동일 동에 소재하여 건물요인 대등함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 상태		
	경과 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개별적 요인	층별 효용	1.00	사례와 본건은 층별 효용, 향별 효용 등 개별적 요인 대등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사례와 본건은 기타요인 대등함
개별요인비교치		1.00× 1.00× 1.00× 1.00=1.000	

#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번호	거래사례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전유면적비교	시산가액
1	260,000,000	1.00	0.97383	1.000	66.8358 / 66.8358	253,195,800

## 7. 참고가격자료

(1) 인근 평가사례[ 출처: 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명칭	전유면적 (㎡)	평가가액	평가가액 / 전유면적 (원/㎡)	가격시점	평가목적
ㄱ	용흥동 615-21	빌드원르헤브 3차아파트 110*호	66.8358	247,000,000	3,695,624	2021.07.16	담보
ㄴ	용흥동 615-21	빌드원르헤브 3차아파트 110*호	66.8358	254,000,000	3,800,358	2024.08.28	경매
ㄷ	용흥동 615-21	빌드원르헤브 3차아파트 110*호	66.8358	254,000,00	3,800,358	2024.08.30	경매
ㄹ	용흥동 615-21	빌드원르헤브 3차아파트 140*호	66.8358	254,000,00	3,800,358	2024.09.02	경매

※(참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파트 호수의 마지막 숫자는 \*으로 표시했음.

#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 1. 결정의견

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상기 참고가격자료의 분석 내용 등을 참조하여 본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 2. 감정평가액 결정

일련 번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전유면적 (㎡)	토지지분 (㎡)	감정평가액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651- 21	빌드윈 르헤브 3차아파트	11층 1102호	66.8358	41.1803	253,000,000

#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동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도로명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41번길 42	건물의  615-21  빌드윈 르헤브3차 아파트	표시]  공동주택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1층				
				2층~9층	128.1152			
				10층~14층	각 669.248			
					각 626.9556			
	[전유부분          [대지권의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의 건물          목적인  615-21	의 표시]     토지의  대	11층 11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표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권의종류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1.	66.8358  4,268.9  41.1803 ----- 4,268.9	66.8358    41.1803	253,000,000	일괄평가
	<b>합 계</b>						<b>₩253,000,000.-</b>	
			이	하	여	백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포항남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학교,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 접근성 및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중 11층 1102호 단위세대로서;  
 (사용승인일: 2021.07.14)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 내장바닥재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아파트의 향 : 남서향

##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 및 옥내소화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가로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아파트 단지는 남동측으로 폭 약 8미터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상임.
- (2) 기 타: 본건 아파트의 현장조사시, 폐문 및 관계인 부재로 본건 아파트의 내부구조, 설비, 마감상태 등의 조사가 곤란하여 외부관찰, 탐문조사, 인근 평가전례 등에 의거 동전형 아파트의 일반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며, 건물 구조변경 및 내부하자 유무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 위치도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615-21 빌드원르헤브3차아파트 11층 1102호



# 위치도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615-21 빌드원르헤브3차아파트 11층 1102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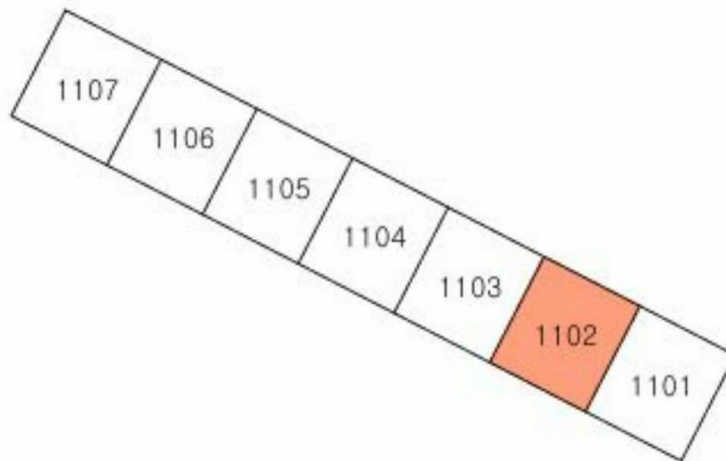
# 호별배치도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615-21 빌드원르헤브3차아파트 11층 1102호

호별배치도(No Scale)



본건(빌드원르헤브3차아파트 제11층 제1102호)



3 ( )



3 ( )



3 1-2



3 11 1102